

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동해안지역발전연구소 운영규정

(제정) 2006-03-22

(개정) 2016-04-25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동해안지역발전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4.25>

제2조(명칭 및 소재) 본 연구소는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동해안지역발전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.)로 하며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내에 둔다.<개정 2016.4.25>

제3조(기능 및 사업) 본 연구소는 동해안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제반 연구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지역발전과 관련된 기초연구 및 조사
- ② 대학 자체 연구과제 및 지역, 또는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
- ③ 연구논문 및 학술지 발간
- ④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자문 및 기술개발
- ⑤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4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기획·연구부, 지역경제부, 지역개발부, 사무국을 두며 자문기구인 지역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각 부에는 5인 이내의 연구원을 두되,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국은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.<개정 2016.4.25>

④ 지역자문위원회는 지역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지역의 유지 및 사회단체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소장 및 임원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,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각 부에는 1인의 부장을 두며,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소장은 교직원 중에서 1인을 정하여 간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원 등)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원 및 초빙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본 연구소의 사업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역인근 대학의 교수나 지역발전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 부 마다 5인 이내의 초빙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연구원의

위촉절차와 동일하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10인 이내의 연구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소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연구소의 주요사업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 운영에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3.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및 연구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, 개최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재정 및 회계연도) ① 본 연구소의 재원은 본 대학의 보조금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외부 찬조금, 연구용역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,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9조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